10-61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내규

2014. 10. 15. 제정

주무부서 : 연구처 공동기기센터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중앙대학교의 각 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촉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동활용장비” 라 함은 교내 타부서 연구자나 외부기관에게 장비활용을 허용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로써, 사용료를 부과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사용료” 라 함은 장비의 공동활용을 신청하는 자가 장비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공동활용 연구장비 정보시스템” (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과 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전용 홈페이지를 말하며, 관리 운영은 공동기기센터에서 한다.

④ “관리부서장” 이라 함은 학과(부) 소속 장비는 소속 학과(부)장, 대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는 학장, 이외 부서의 경우는 부서장을 말한다.

⑤ “장비책임자” 라 함은 해당 공동활용장비 운영의 책임을 맡는 자를 말한다.

⑥ “장비담당자” 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비운용에 대한 전담인력을 말한다.

⑦ “사용자” 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중앙대학교 학과(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을 허용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동활용장비 선정) ① 각 학과(부)에서 연구목적으로 구입하는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단 3천만원 미만이라

도 공동활용이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목적이 아닌 사무용 기기 등 공동활용이 불가한 3천만원 미만의 장비

2. 구입단가가 3천만원 이상이라도 특수목적의 장비로서 단독사용이 필수적인 장비.

제5조(공동활용장비의 등록) 장비담당자는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내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공동기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장비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및 관리) ① 교내 혹은 외부기관에서 공동활용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사항과 해당 장비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장의 원인이 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하거나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고장으로 인하여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밖에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사용료 산정 및 납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정은 재료비, 소모품, 유지관리비, 간접비를 고려하여 장비책임자와 공동기기센터장이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정한다. 다만 장비제공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관리) ① 공동활용으로 징수된 장비사용료 수입은 교비회계로 귀속하며,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동기기센터 “학과보유 공동활용 장비 관리비” 지출예산으로 배정한다.

② 배정된 “학과보유 공동활용 장비관리비” 는 학과보유 공동활용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③ 회계연도 종료 후 지출예산 잔액은 공동활용 장비를 위한 연구기금으로 적립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으로 인출을 요청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학과(부)의 세부관리지침에 의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